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간이회생절차 신청권자의 범위 확대 등 〉

■ 박준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441호)

2025. 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간이회생절차 신청권자의 범위 확대(안 제293조의2제2호·제3호 및 제579 조제2호·제3호)	3
2. 상세한 채권자목록 제출을 통한 간이회생절차 기간 단축(안 제293조의4 제4항제1호 등)	14
3. 간이회생절차 법정 소요기간 단축(안 제293조의5제5항)	20
4.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안 제383조제2항제3호)	25
5.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파산신청으로의 전환(안 제594조의2 신설)	31
6. 관계기관 의견	3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준태의원 등 16인

(2) 제 안 일 : 2024. 9. 30.

(3) 회 부 일 : 2024.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2015년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도입한 이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고, 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함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 신속히 파산절차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파산채무자의 생계에 사용하는 영업용 필수재산을 채무자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단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파산채무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사전 채권자목록 제출(안 제293조의4제4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6항)

간이회생절차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별도의 목록제출기간 부여 없이 채권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간이회생절차 법정 소요기간 단축(안 제293조의제5조제5항 신설)

간이회생 개시 결정을 하는 때에는 제50조제1항의 절차 단계별 최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정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급여소득자 등 간이회생절차 신청권자 확대(안 제293조의2제2호 및 제3호)

현재 채무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로 한정된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급여소득자에게도 확대

라.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안 제594조의2 신설)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중 파산으로 진행할 사건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기존에 진행된 절차를 유지한 채 파산절차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

마. 영업용 필수재산이 파산재단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함(안 제383조 제2항제3호 신설)

채무자의 영업용 필수재산을 채무자의 신청 및 법원의 결정으로 파산재단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Ⅲ. 검토의견

1. 간이회생절차 신청권자의 범위 확대 (안 제293조의2제2호·제3호 및 제579조제2호·제3호)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의 용어 정의 규정에 “급여소득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안 제293조의2제2호 신설), 소액영업소득자 개념에 급여소득자를 추가한 후 “소득영업소득자 등”으로 정의하여(안 제293조의2제3호),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u><신설></u>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u>영업소득자</u> 를 말한다.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소액영업소득자 등”이란 ----- ----- ----- ----- <u>영업소득자</u> 또는 <u>급여소득자</u> 를 -----.

현행	개정안
3. (생략)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579조(용어의 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급여소득자”란 제293조의2제2호의 자를 의미한다. 3. “영업소득자”란 제293조의2제1호의 자를 의미한다. 4. (현행과 같음)

나.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상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라 함) 제9장에서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2편(회생절차)은 대기업에 적합한 모델로 절차가 복잡하고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회생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2014. 12. 30.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액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었음.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가 법원에 간이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을 하면서 절차가 시작되는바, 간이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은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취지,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근거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함(제293조의4)¹⁾.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이 개시 요건에 부합하고 기각사유가 없으면 간이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고²⁾, 간이회생절차에는 제9장(소액영

1)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이 같은 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5.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6.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7.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3.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2)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293조의4제1항 본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받게 됨³⁾.

회생절차와 다른 간이회생절차의 특칙으로는 ①관리인 불선임 원칙(제293조의6), ②간이조사위원의 선임과 간이한 방법에 의한 조사(제293조의7), ③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의 완화(제293조의8)가 있는바,

우선, ①관리인 불선임 원칙(제293조의6)4)은 간이회생절차에 있어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 또는 법인인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경영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 소액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관리인 불선임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 채무자가 제293조의4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경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

가. 회생절차개시결정

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③ 법원은 제1항의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확정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밝혀진 경우

2.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됨이 밝혀진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 및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간이회생절차에서 행하여진 제6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처분·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면 회생절차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제2편(회생절차)은 제외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회생절차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회생절차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4)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6(관리인의 불선임) ①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이 편에 따른 관리인으로 본다.

다음, ②간이조사위원의 선임과 간이한 방법에 의한 조사(제293조의 7)⁵⁾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회생절차와 달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도 선임이 가능하며, 회생절차에 소요되는 채무자의 비용 절감을 위해 조사위원의 대체 기관으로 간이조사위원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음⁶⁾. 간이조사위원은 제87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하는바⁷⁾, 조사위원보다는 적은 보수를 지급받게 됨⁸⁾.

마지막으로, ③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의 특례(제293조의 8)⁹⁾는 간이회생

5)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 7(간이조사위원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60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간이조사위원에 대해서는 제79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제1항 및 제87조를 준용한다.

② 간이조사위원은 제87조에 따른 조사위원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된 경우 관리인은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인의 업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6) 「채무자회생법」 제601조제1항(1.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 2. 법원사무관등 3. 변호사·공인회계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법원주사보·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은행법」에 의한 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6. 채무자를 상대로 신용관리교육·상담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회생위원의 직무수행에 적합한 자)에 규정된 자를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등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법원사무관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음.

7) 재산가액의 평가(제90조),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제91조), 조사보고가 정한 사항의 조사(제92), 법원이 명하는 경우 간이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타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함(제87조제3항·제4항).

8) 간이조사위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실무적으로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응하여 조사위원의 보수보다는 대폭 감액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고,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1권』, 2024.1. 1019면).

9)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 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간이회생절차의 관계인집회에서는 제237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안에 관하여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

1.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있을 것

2.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것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의 가결은 회생채권자 조의 경우 통상의 회생절차에서의 가결 요건(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자의 동의)을 갖춘 경우뿐만 아니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1/2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결된 것으로 봄. 의결권 총액의 동의는 2/3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소액의 의결권을 가진 여러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음¹⁰⁾.

[일반·개인회생절차와 간이회생절차의 비교]

	회생절차		개인회생
	일반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신청권자	채무자(채무한도 제한 없음) 또는 일정한 채권자·주주	법인 또는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 (부채총액 50억 이하의 채무자)	개인채무자 (담보부채권 15억 무담보 10억 이하의 채무자)
조사위원	조사위원(회계법인)	간이조사위원(관리인, 법원사무관, 회계사 등)	불선임 (회생위원 일부 기능)
회생채권자 가결요건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의 동의	회생채권자조 가결요건 완화 ①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2/3 이상 또는 ② 의결권 총액 과반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 투표 절차 없음
관리인	기존경영자관리인(원칙) 예외적으로 제3자 관리인, 관리인 불선임 가능	관리인 불선임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간주)	채무자 (개인회생재단 관리 처분권)
계획안 기간	10년 이하 (실무 일반 10년)	10년 이하 (최근 실무 5년~10년)	3년 이하 (예외 5년 이하)
권리변경 시점	회생계획 인가결정 시		변제계획 수행 완료 후 면책결정 시

자료: 법무부

10)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1권』, 2024.1. 1020면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의 용어 정의에 “급여소득자”를 추가하고, 소액영업소득자 개념에 급여소득자를 추가한 후 “소액영업소득자 등”으로 정의하는 내용으로, 개정이유에 따르면 현재 채무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로 한정된 간이회생 신청 자격을 급여소득자에게도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간이회생절차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제293조의4제1항)¹¹⁾, 소액영업소득자란 간이회생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¹²⁾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하고(제293조의2제2호)¹³⁾,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제293조의2제1호)¹⁴⁾. 이러한 소액영업소득자에는 법인과 개인이 모두 포함되나, 급여소득자는 제외되어 있음.

11)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5조의3(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13)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14)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한다.

그로 인해 급여소득자 중 유치권·질권·저당권 등 담보부 채권 15억원 또는 무담보채권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 절차의 이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담보부 채권 15억원 또는 무담보채권 1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되, 총 채무액이 50억원 미만인 급여소득자는 개인회생절차와 간이회생절차 이용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인바,

간이회생절차의 도입 취지가 복잡하고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는 기존 회생절차에 별도의 특칙을 두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이하게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급여소득자에 대하여도 소액영업소득자에 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¹⁵⁾.

[개인 소득 및 유형별 이용 가능 절차 비교]

			회생절차	간이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인	영업 소득자	50억원 미만	○	○	×
		담보부 채권 15억 이하, 무담보채권 10억 이하	○	○	○
	급여 소득자	50억원 미만	○	×	×
		담보부 채권 15억 이하, 무담보채권 10억 이하	○	×	○

15)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1권』, 2024.1. 1012면.

이에 개정안은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의 용어 정의 규정에 “급여소득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소액영업소득자 개념에 급여소득자를 추가한 후 “소득영업소득자 등”으로 정의하여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업소득자에 비해 부채구조가 단순하고, 정기소득이 있어 회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급여소득자인 파산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급여소득자 등에게도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용어의 정의에 “급여소득자”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고, 소액영업소득자 개념에 급여소득자를 추가한 후 “소득영업소득자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정의 규정만 변경한 후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은 정비하지 않아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제2편 제9장 조문에 규정된 “소액영업소득자”를 “소액영업소득자 등”으로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제293조의2(용어의 정의)제2호에 “급여소득자” 정의를 추가함에 있어 제4편(개인회생절차) 제579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정의를 차용하여 규정하고, 그에 따라 제579조는 제293조의2에서 정의한 용어의 중복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함께 정비하고 있는바,

① 제4편의 개인회생절차와 제2편제9장의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는 별도의 절차로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각각의 절차에서 용어를 개별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보이며,

② 개정안에 따른 경우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를 정의함에 있어 “채무자”와 “개인”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므로 통일성 있는 용어로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현행법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는 소액영업소득자만이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제3항) 및 첨부서류(제4항)를 규정하고 있는바¹⁶⁾,

16)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자는 제1항의 신청을 하는 때에 그 신청이 같은 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5.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6.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7.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에 따른 경우 영업소득자 외에 급여소득자에게도 간이회생절차 신청 자격이 부여되므로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을 참고하여 이에 부합하게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⁷⁾.

넷째, 개정안은 시행일 외에 적용례 등 별도의 부칙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담보부채권 15억원 또는 무담보채권 10억원 이상 총 채무액 50억원 미만의 급여소득자는 일반 회생절차가 아닌 간이회생절차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일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간이회생절차의 신청이 가능한지 등 어느 대상이나 어떤 경우부터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 채권자목록
 2.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3.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17) 「채무자회생법」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법원은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중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3.>

④ 제3항에 따라 확인된 행정정보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같은 조 제2호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상세한 채권자목록 제출을 통한 간이회생절차 기간 단축 (안 제293조의4제4항제1호 등)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함에 있어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채권자목록”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제14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으로 변경하고(안 제293조의4제4항제1호),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이 제출된 경우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며(안 제293조의4제5항),

소액영업소득자 등이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일반 회생절차에서의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임(안 제293조의4제6항).

현행	개정안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u>1. 채권자목록</u>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1.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제147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2. ~ 4. (생략) <u><신설></u> <u><신설></u>	2. ~ 4. (현행과 같음) <u>⑤ 제4항제1호의 목록이 제출된 때에는 제147조제1항의 목록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u> <u>⑥ 제147조제4항¹⁸⁾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u>

나. 현행법상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 ①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③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④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⑤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⑥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⑦간이회생절차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의 회생절차개시신청 의사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제293조의4제3항)¹⁹⁾.

18) 「채무자회생법」 제147조(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④ 관리인은 신고기간의 말일까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다.

19)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③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채무자의 대표자의 성명
3.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구하는 취지
4.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원인
5. 채무자의 영업 내용 및 재산 상태
6.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 및 그 산정 근거

또한,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①채권자목록, ②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③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④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제293조의4제4항)²⁰⁾.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신청서에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채무액과 산정근거를 기재하도록 한 것에 대응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채권자와 액수를 심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인바,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은 절차 개시 후 제147조²¹⁾에 따라 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과 별개의 것이므로 관리인은 개시신청서 첨부서류로 채권자목록이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절차

7. 제2항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

20)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4(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채무자의 영업 내용에 관한 자료
3.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1조의2(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93조의4제4항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자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3. 과거 3년간의 비교채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21) 「채무자회생법」 제147조(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①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이 편에서 “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시 후 다시 회생채권자 등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²²⁾, 이러한 목록 제출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제50조 제1항제1호)임²³⁾.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함에 있어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채권자목록”을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으로 변경하고,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이 제출된 경우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상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관리인이 별도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생채권자 등의 채권자목록 제출기간이 부여되어 야기되는 절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간이회생절차의 신속성·효율성을 도모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음.

즉, 현행법상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 불선임 원칙(제293조의6)을

22)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1권』, 2024.1. 1015면

23) 「채무자회생법」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규정하여 채무자(개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하는데, 채무자는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이후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을 거쳐 회생채권자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제293조의3, 제147조제1항)해야 해서 절차 지연이 발생하므로 간이회생절차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절차 단축을 통한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채권자목록 제출 관련 현행 절차와 개정안의 비교]

현행		개정
①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에 '채권자 목록' 첨부하여 제출	⇒	①+③ 간이회생절차 신청서에 회생채권자 목록, 회생담보권자 목록, 주주·지분권자 목록 제출
② 회생절차개시결정		
③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생채권자 목록, 회생담보권자 목록, 주주·지분권자 목록 제출		② 회생절차개시결정

다만, 개정안은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 첨부하는 채권자목록을 일반 회생절차에 있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제출하는 회생채권자 목록, 회생담보권자 목록, 주주·지분권자 목록으로 대체하여 신청 당시 상세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인바,

현행법상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 제출토록 하는 채권자목록은

채무액과 산정근거 등을 살펴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 간이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개괄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작성하는 회생채권자 목록 등과는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 당시 회생채권자 목록 등 구체적인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오히려 간이회생절차개시 신청 자체를 어렵게 하거나 신청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²⁴⁾.

한편, 개정안 제293조의4제5항·제6항은 회생채권자 등 목록이 제출된 경우 제147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고, 일반 회생절차에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액영업소득자 등이 제출한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기재 사항을 법원의 허가를 거쳐 변경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바, 용어 및 준용 부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²⁵⁾.

24) 법원행정처는 소액영업소득자 등인 채무자가 관리인이 제출해야 하는 상세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을 구비하는 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이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25) 안 제293조의4제5항 중 “제4항제1호의 목록”을 “제4항제1호에 따른 목록”으로 수정하고, 안 제293조의4제6항 “제147조제4항은 제5항의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제4항제1호에 따른 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에 관하여는 제147조제4항은 준용한다”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간이회생절차 법정 소요기간 단축(안 제293조의5제5항)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법원이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는 경우 제50조제1항에 정한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 ④ (생략) <u><신설></u>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정한 기간을 줄일 수 있다.</u>

나. 현행법상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할 사항 및 기간

현행법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제1항²⁶⁾은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회의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선임하고 신고기간, 조사기간, 제출기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⁷⁾.

26) 「채무자회생법」 제293조의3(적용규정 등) ① 간이회생절차에 관하여는 이 장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2편(회생절차)의 규정을 적용한다.

27) 「채무자회생법」 제50조(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하여야 할 사항) ①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회의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

[현행법상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할 사항 및 기간]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정할 사항		기간
1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제1호에 따라 정하여진 제출기간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
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4개월 이하(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

다. (간이)회생사건 소요기간 관련 현황

간이회생절차가 도입된 이후 법인의 회생 및 간이회생 사건의 평균 소요일수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신청~개시, 개시~인가, 인가~종결 기간을 합하여 볼 때 회생사건은 996일, 간이회생사건은 500일이 소요되어 간이회생사건이 회생사건에 비하여 2배 가량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을 정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이 제147조제1항에 규정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기간은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이하 이 편에서 “신고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신고기간은 제1호에 따라 정하여진 제출기간의 말일(제223조제4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3.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이하 이 편에서 “조사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간은 신고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이어야 한다.
 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이 경우 제출기간은 조사기간의 말일(제223조제4항에 따른 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4개월 이하(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2개월 이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③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출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거나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제출기간의 연장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간이회생 도입 이후 법인의 회생 및 간이회생 평균소요일수(전국)]

(단위: 일)

		2015.7.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신청~ 개시	회합	35	35	37	39	44	46	53	54	57
	간회합	20	29	32	30	40	37	40	48	45
개시~ 인가	회합	233	237	235	234	236	249	288	311	300
	간회합	95	150	162	163	184	206	222	233	226
인가~ 폐지	회합	1049	1069	1058	1136	1038	1002	975	1246	1112
	간회합	-	217	345	443	595	836	701	859	712
인가~ 종결	회합	517	640	497	464	394	444	424	419	639
	간회합	41	85	117	160	156	178	171	209	229

*회합: 회생합의사건, 간회합: 간이회생합의사건

자료: 대법원

이는 최근 5년간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 소요기간을 비교한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바, 회생사건에 비해 간이회생사건이 신청~개시결정까지는 10일 내외, 개시~인가결정은 60~80일 가량 더 신속하였음.

[최근 5년간 소요기간 평균 비교]

(단위: 일)

	구분	신청 ~ 개시	개시 ~ 인가	인가 ~ 종결
서울회생법원	회합	31	250	204
	간회합	24	178	97
전국법원	회합	51	276	464
	간회합	41	214	189

자료: 대법원

다만, 간이회생절차 이용 대상의 부채한도가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된 2020년 이후부터는 각 단계별 소요기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원이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는 경우 정하여야 하는 신고기간, 조사기간, 제출기간 등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법률이 정한 간이회생절차의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 제50조제1항에서는 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신고기간, 조사기간, 제출기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 기간의 하한과 상한을 규정하고 있어 절차 소요시간의 단축에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인바,

①간이회생절차가 일반 회생절차에 비해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건신청부터 종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인 점, ②법원의 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근거 규정(제50조제2항·제3항)이 있으나, 기간 단축에 대하여는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③현행법 제119조28)에 회생절차에 있어 법원의 법정 기간 단축에 참고

28)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

할 만한 규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293조의5제5항에서는 법원이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 시 ‘제50조제1항’에 정한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293조의4에서는 채권자 목록 대신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목록이 제출된 경우 제147조제1항에 따른 목록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은 간이회생절차개시 결정시에 정할 사항에서 제외되고, 제5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은 별도의 하한이 없어 기간단축의 실익이 없음. 따라서 간이회생절차에서 법원이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은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 ④ (생략) <신설>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정한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제293조의5(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기간-----.

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는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4.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안 제383조 제2항제3호)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법원이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면제재산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영업용 차량, 도구, 재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 (생략)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영업용 차량, 도구, 재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재산</u>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나. 현행법상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따른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지만(제382조)²⁹⁾,

압류할 수 없는 재산³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고(제383조제1항)³¹⁾,

[「민사집행법」 상 압류금지재산]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승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

29) 「채무자회생법」 제382조(파산재단)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30) 압류금지재산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과 압류금지채권 모두를 포함.

31) 「채무자회생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①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³²⁾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 ②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

32)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

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³³⁾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83조제2항)³⁴⁾.

다. 검토의견

개정안은 법원이 개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면제재산에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없어서

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 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 33)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면제재산) ② 법 제38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파산선고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 34) 「채무자회생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는 아니될 영업용 차량, 도구, 재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일정 금액 범위 내의 영업용 필수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이 파산하는 경우 영업용 필수 재산 보전을 통해 이들의 생계유지 및 경제적 재기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필수품이나 생계를 유지함에 있어 필요한 도구나 물건 등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법원에 면제재산결정의 신청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거나, 파산재단에 포함된 경우에도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없는 상황임.

개정안에 따른 경우 채무자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재산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법원에 면제재산결정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³⁵⁾, 면제재산으로 결

35) 「채무자회생법」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

정된 이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은 자유재산을 활용하여 영세소상공인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제재산결정이 있는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서 제외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는 제한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생계유지 필수품 등에 대한 영세소상공인의 경제생활 유지의 측면과 면제재산 확대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감소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면제재산 범위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 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5.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파산신청으로의 전환(안 제594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에 있어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파산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제594조의2(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파산신청으로의 전환)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파산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이미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제592조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이 있는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던 때에 파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589조에 의한 신청서류, 제590조에 의한 비용의 예납은 파산신청을 위한 것으로 본다.</u> <u>④ 제1항의 전환에 따라 종료되는 제593조제1항제2호·제4호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는 파산선고 여부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u> <u>⑤ 제1항 및 제4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u>

나.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및 실무운용상 전환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³⁶⁾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3년간 변제³⁷⁾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임.

반면, 개인파산절차는 개인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환가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임.

개인회생절차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하는 절차(회생형)인 반면,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파산재단)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재원으로 하는 절차(청산형)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신청권자, 채무한도 제한, 변제재원, 채무조정 수준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음.

36)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한다.

37) 「채무자회생법」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차이]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자	개인채무자로서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제한 없음
신청원인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파산의 원인인 사실
채무한도	담보채무: 최대 15억원 무담보채무: 최대 10억원	채무한도 없음
변제자원	장래 채무자의 소득	파산선고 당시의 파산재단
변제방법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재산의 청산
채무조정 수준	장래 소득으로 3년간(예외 5년간) 변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소유재산 을 처분하여 변제하는 것보다 장래 수입으로 3~5년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것이 더 많아야 함)	장래소득 변제 불요,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배당
관리처분권	채무자	파산관재인
면책절차	변제완료 후 법원의 면책결정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면책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는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는바, 개인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개인회생절차가 신청되었더라도 개시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진행 중이던 개인파산절차는 중지되고(제600조제1항제1호)³⁸⁾,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38)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중지된 파산절차는 효력을 잃게 되며(제615조제3항)³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개인파산절차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는바(제593조제1항제1호)⁴⁰⁾, 현행법은 개인회생절차의 우선성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⁴¹⁾.

다만, 현행법에서는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파산절차로 전환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한바, 절차를 잘못 선택하거나,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 등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함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개인파산절차로 전환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으로,

재판 실무에서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의 절차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려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형태로 제도를 보완하여 운영하고 있음⁴²⁾.

39) 「채무자회생법」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0)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41) 박민준,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사이의 적정한 역할 분담을 위한 방안의 검토”, 법조 제69권제5호(통권 제743호), 2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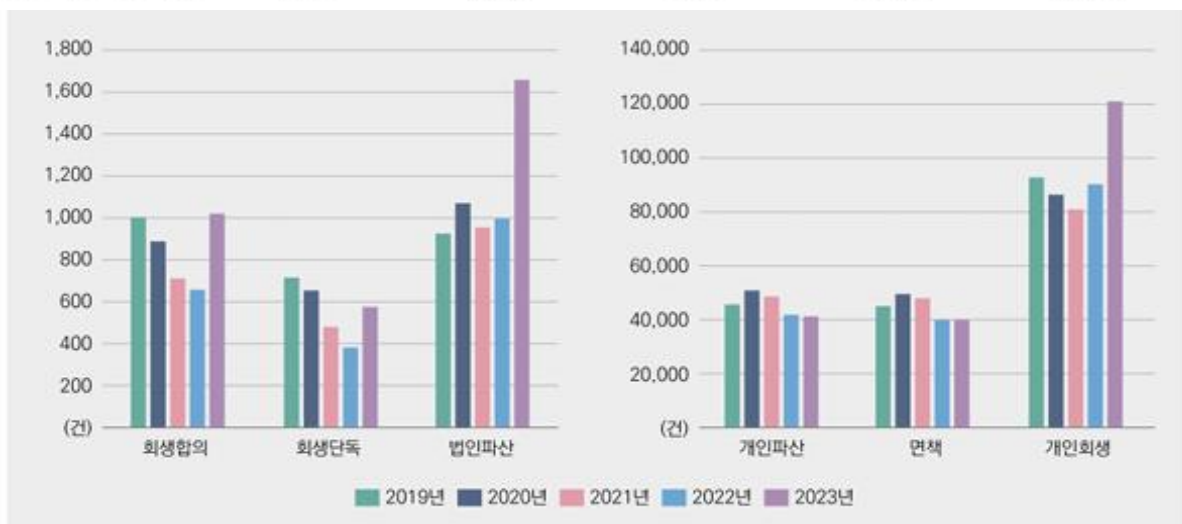
4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제407호, 2020. 11. 23. 제정)

다. 검토의견

최근 5년간 개인회생사건 및 개인파산사건의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1,017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41,239건으로 3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개인회생 접수 건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최근 5년간 개인회생사건 및 개인파산사건 접수 현황]

사 건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회 생 합 의		1,003	892	717	661	1,024
회 생 단 독		719	660	474	386	578
법 인 파 산		931	1,069	955	1,004	1,657
개 인 파 산		45,642	50,379	49,063	41,463	41,239
면 책		44,853	49,467	47,936	40,182	39,711
개 인 회 생		92,587	86,553	81,030	89,966	121,017



자료: 대법원 사법연감(2023)

이렇듯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개인파산 신청 건수보다 많은 이유는 개인회생절차가 파산선고로 인한 신분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현존 자산을 지키면서 채무의 일부 변제를 통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는 이점 등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선호하는 현상에 기인한바, 사실상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채무자도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⁴³⁾.

이러한 채무자는 결국 회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는바, 이 경우 채무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출발이 늦어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도산절차와 관련된 접근성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며, 법원 입장에서도 사건을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과 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⁴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 실무에서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내용의 절차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내려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회생법원 실무준칙 등의 내용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로

43) 서경환, “파산면책의 정당화 근거 및 개인도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법조(통권 제737호), 2019. 10.

44) 박민준,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위한 방안의 검토”, 법조 제69권제5호 (통권 제743호), 2020.10.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제407호, 2020. 11. 23. 제정) 제정 취지 참조

신청된 파산대상 사건의 경우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 개시결정 전 단계에서 절차를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도산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절차적·경제적 측면의 효용성을 제고함에 개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 제594조의2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이 있기 전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파산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있었던 때에 파산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채무자가 법원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회생법원 실무준칙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법원에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문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개정안은 시행일 외에 적용례 등 별도의 부칙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현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있는 채무자도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

이 있으므로 그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적용례를 두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는 개정안은 간이회생 절차 이용 대상을 현재 채무액 50억원 이하의 영업소득자로 한정된 것을 급여소득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으로, 부채구조가 단순하고 정기 소득이 있어 회생가능성이 높은 일정 부채 규모의 급여소득자 및 기업채무를 연대보증한 대표이사 등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파산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파산절차를 이용해야 함에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경우 절차 변경을 위한 별도 제도가 부존재하여 추가 비용 발생 및 절차 소요 시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한 절차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회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단순하고 규모가 작은 부채구조를 가진 채무자에게 비용절감과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도입된 간이회생절차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영업소득자보다 통상적으로 단순한 부채구조를 가진 급여소득자도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개정안 중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파산절차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돕고, 현행 실무(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조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를 반영할 때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는 취지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에 해당하나, 대법원규칙으로의 위임사항을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고, 대법원규칙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 여부 검토 등을 위해 일정 시일이 소요되므로 시행일은 연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

참고 1

회생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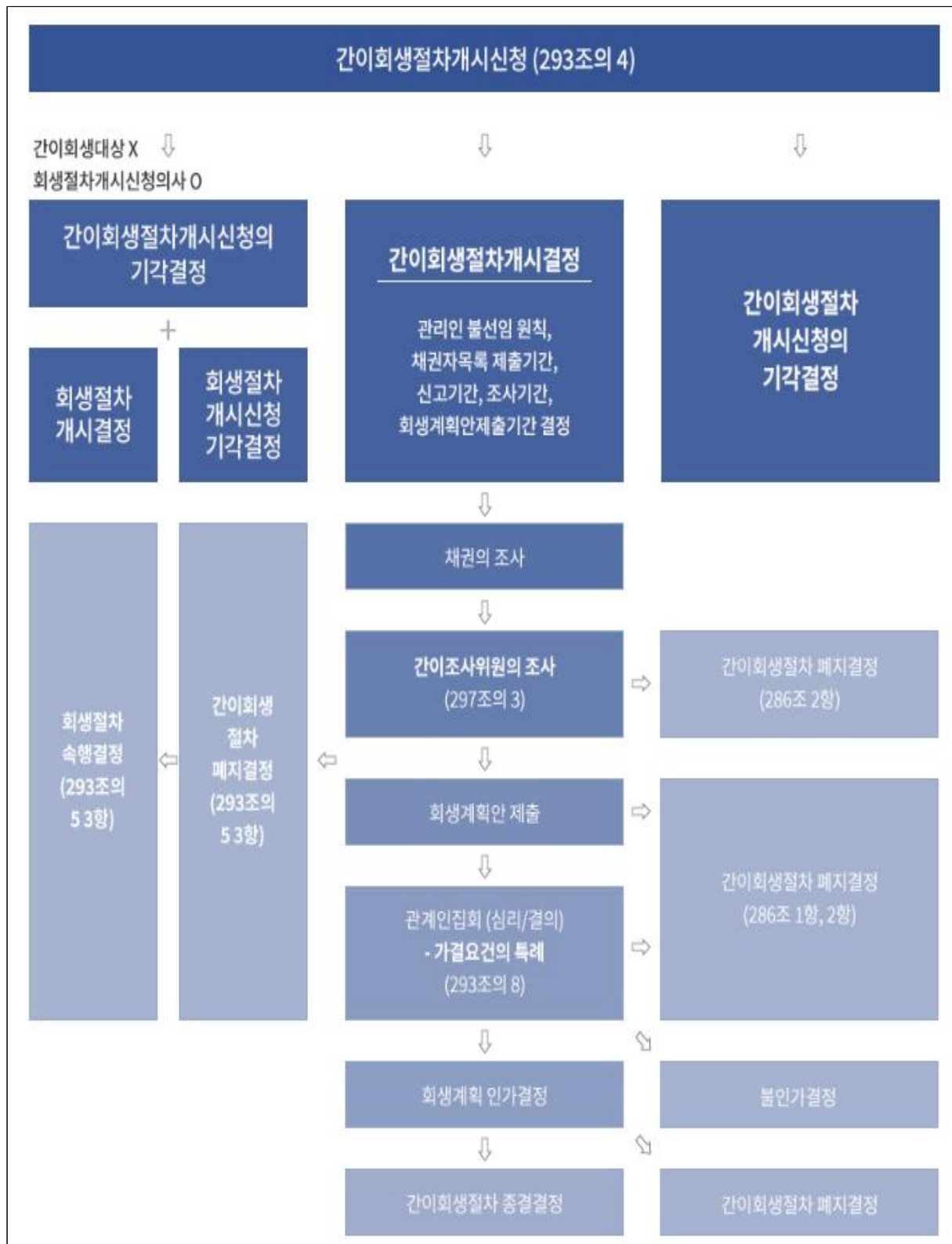


참고 2

개인회생절차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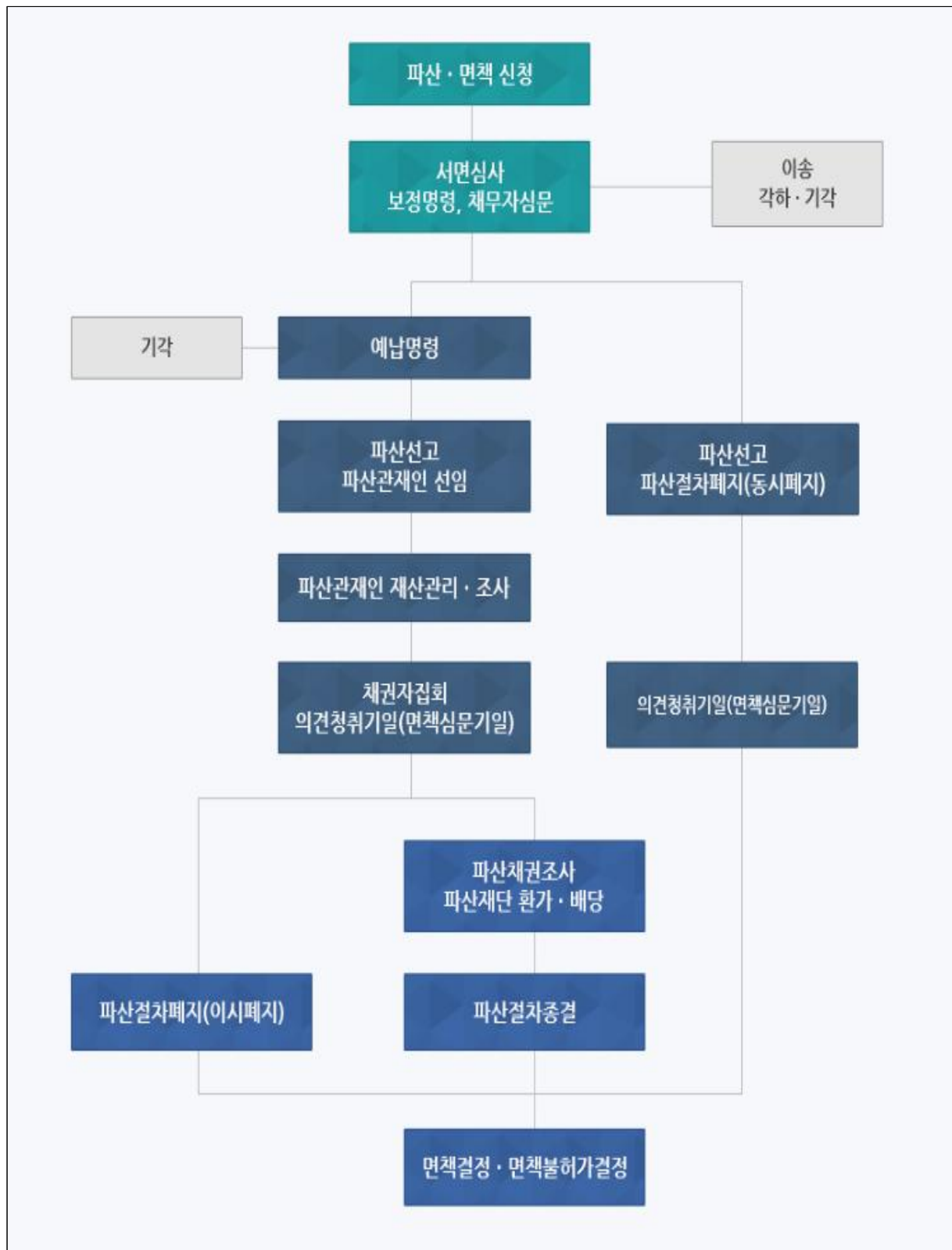


간이회생절차 흐름도



참고 4

개인파산절차 흐름도



참고 5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운용상 전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1조(목적) 준칙 제407호는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개인회생의 취하 및 개인파산의 신청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무운용상 전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생위원의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작성) ① 회생위원은 개인회생 사건 중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1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생위원이 [별지1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절차 전환에 대한 회생위원의 의견을 정함에 있어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제3조(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 ①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는 당해 사건에서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파산절차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별지 2 보정명령 양식]에 따라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판사는 회생위원이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준칙 제411호에 따라 개시결정 전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제1항에 열거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항에서 규정한 보정명령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사건에 관하여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라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른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제1항에서 규정한 보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조(파산선고 후 개인회생 사건의 처리) 제3조에 의한 보정명령이 있는 후에 채무자가 그에 따라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으나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회생위원은 준칙 제411호 제2조에 따라 업무수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제출함에 있어서 법 제595조제1호에서 정한 개시 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보이면 그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고, 판사는 법 제595조제1호에서 정한 개시신청 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할 수 있다.

[별지 1 보고서 양식]

제○○○회생위원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

사 건 : 20○○개회○○○○호

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제○○○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회생 사건의 취하 및 개인파산 신청의 권유에 대하여 보고합니다.

- 다 음 -

절차 전환이 필요한 사유	☐ 채무자의 수입이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60에 미치지 못함 ☐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그 외의 사유()
기타사항	
절차 전환에 대한 회생위원 의견	적정 의견 또는 부적정 의견

[첨부1]

파산 및 면책 신청서(전환용)

인지
2000원

기존 개인회생 사건의 사건번호 : 20__개회____ (담당 판사의 성명 : _____)

신 청 인(채 무 자)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우편번호 :)

거 소 : (우편번호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 집전화() , e-mail()

신 청 취 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첨부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며,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파산신청에 따른 추가 진술사항 1부
2. 채권자목록 1부
3.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1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파산선고결정, 면책결정 등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신청인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또는 면책심문기일 결정), 면책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
신 청 인

인

서울회생법원 귀중

파산사건번호	
면책사건번호	
배당순위번호	
재 관 부 제 단독	